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5. 11 선고 2018가단2346 판결

[채무부존재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2. 7. 15. 접수 제393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판사박재경

별지